

울산지방법원 2022. 4. 12 선고 2021나1336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단체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를

담당변호사 최용석

피고, 피항소인 B 주식회사

변 론 종 결 2022. 3. 8.

판 결 선 고 2022. 4. 12.

제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. 5. 26. 선고 2020가소23748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8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. 8. 25.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조합원사인 (유)C 소속 (차량번호 1 생략) 화물자동차(이하 '원고 차량'라 한다)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. 피고는 D 소유의 (차량번호 2 생략) 차량(이하 '피고 차량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.

나. D은 2020. 2. 17. 20:5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사청2길 7 화봉사거리 앞 도로인 편도 4차로 직선도로(이하 '이 사건 도로'라 한다)의 3차로를 주행하던 중 정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점에서 3차로를 가로질러 2차로로 진입하였는데 그때 교통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고 급정지를 하였다. 이 사건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원고 차량 앞으로 진입한 후 곧바로 황색신호에서 정지하는 것을 본 순간 급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틀었으나, 달려오던 힘을 못 이기고 차량이 밀리면서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후미부를 충격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.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이 파손되었다.

다.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40%라고 주장하며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(이하 '이 사건 협정'이라 한다)에 따라 설치된 E위원회(이하 '심의위원회'라 한다)에 심의 청구를 하였다.

라. 심의위원회는 2020. 6. 8.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%,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%로 결정하였고, 원고는 2020. 8. 25. 위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280,000원¹⁾을 지급하고, 이 사건 협정 제26조 제2항2)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³⁾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제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결론이 난 점, 이 사건 도로가 편도 5차로인 점,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간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

차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 차량의 과실을 30%로 인정하여 부당하다.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
나. 피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정상적으로 진로 변경한 후 황색신호를 보고 정지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, 원고 차량의 과실은 심의위원회 결정보다 더욱 무겁다.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없다.

3. 판단

가. 관련 법리

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한편,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(도로교통법 제19조 제1, 3항).

나. 과실비율

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심의위원회는 ‘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 후 정차하고, 원고 차량이 추돌한 사고. 차로 변경 후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전에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, 황색신호였던 점, 추돌사고인 점’을 고려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%로 인정한 점,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(갑 제8호증)에 의하면,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3차로를 주행할 당시 피고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없어 3차로 교통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정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점에서 단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한지 약 2~3초 만에 갑자기 원고 차량이 주행 중이던 이 사건 도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, 황색신호가 들어오자

급정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이를 본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면서 우측 방향으로 급히 핸들을 돌렸으나,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달려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차량이 밀리면서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원고 차량 또한 황색신호가 변경될 무렵 정지선에 가까이 오고 있었음에서 차량 속도를 제대로 감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차량이 2차로로 들어오는 즉시 이를 인식하고 감속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, 이 사건 사고는 야간 시각에 주변 통행 차량의 동태를 살펴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고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시도한 후 급정지 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, 원고 차량의 과실 역시 경합하여 발생하였고, 그 밖에 사고 경위, 충돌 부위, 파손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30%로 봄이 타당하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30%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구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원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준영, 판사 이주황, 판사 정의철

1) (차량가액 1,400,000원 + 대차료 285,660원) × 30% - 225,000원(잔존물공제)

2) 제26조(제소 등) ②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(재심의청구가 된 경우에는 재심의결정 통보서)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고

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구상금분쟁에 관한 제소 등을 할 수 있다.

3) 특히 이 법원 법정에서의 갑 제8호증 CCTV 동영상 시청 결과